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WE BUILD TOMORROW

경기도 광주시 힐스테이트 태전 2차 기획팀 팀장 이태석, TEL : 031-702-5353, FAX : 031-702-0075, e-mail : lts@kunsa.co.kr
464-110,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 4-5번지, http://www.hillstate.co.kr

문 서 번 호 : HDEC-GD07-2016-1480 2016.09.28

수 신 :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참 조 : 특별공급 담당자

제 목 : 장애인 대상 특별공급 협조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건설하는 경기 광주시 「힐스테이트 태전 2차」의 특별공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명단 송부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구 분	예정사항
분양 승인	2016.10.06.(목)
입주자 모집공고	2016.10.06.(목), 문화일보(석간)
특별공급 일정	청약접수 : 2016.10.11.(화), 10:00~15:00 당첨자발표 : 2016.10.11.(화), 16:30
장 소	464-110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 4-5번지 힐스테이트 태전 2차 견본주택

※ 특별공급 신청 대상 세대 및 필요서류는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태전 2차 분양사무소 (직인생략)

<별첨 #01. 특별공급 안내문>

힐스테이트 태전 2차 10단지(C10블럭), 11단지(C11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① 10단지 : 경기도 광주시 태전 7지구 C10블럭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13-3번지 일원)

② 11단지 : 경기도 광주시 태전 7지구 C11블럭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13-7번지 일원)

■ 공급규모

① 10단지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23층 5개동, 총 394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18세대 포함)

② 11단지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7~23층 10개동, 총 706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18세대 포함)

■ 기관 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① 10단지 (36세대)

구분	주택형						
	62A	72A	72B	72C	72D	84	계
기관 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등)	4	8	2	6	6	10	36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② 11단지 (68세대)

구분	주택형					
	62A	62B	72A	72B	84	계
기관 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등)	13	11	17	11	16	68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및 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06.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대상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이주대책대상자 중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 기준이 청약예금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인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제4절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3항 관련, 별표 2)

구 분	광주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해양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06. 예정) 현재, 공급신청자나 공급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3. 특별공급 일정 및 방법

■ 공급일정

신청일자	당첨자 선정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장소
2016.10.11.(화) 10:00~15:00	2016.10.11.(화) 16:30	10단지 : 2016.10.20.(목) 11단지 : 2016.10.19.(수)	2016.10.25.(화) ~ 2016.10.27.(목)	당사 견본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체결은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야만 가능.

※ 당첨 동·호수 확인 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당선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겨우 추첨에 의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당선자 선정 유의사항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24회)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구성원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직증명서	본인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06. 예정)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견본주택 위치 및 기타 문의사항

홈페이지 : http://www.hillstate.co.kr

견본주택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 4-5번지

문의전화 : 031-702-5353

<별첨 #02. 힐스테이트 태전 2차 참고자료>

■ 조감도 (통합 1)

■ 조감도 (통합 2)

■ 단지배치도 (통합)

N
1101동
1102동
1103동
1104동
1105동
1106동
1107동
1108동
1109동
1110동
1001동
1002동
1003동
1004동
1005동
어린이놀이터
중앙광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소공원